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기상특보 발표 시 훈련 조정〉

■ 정준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750호)

2025. 9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서 덕 교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준호의원 등 13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3. 회부연월일 : 2025. 7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,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.

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,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 6조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 시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
경우 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,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
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6조(훈련) ① ~ ④ (생략)	제6조(훈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경우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,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⑥ ----- -----미세먼지 및 기상특보에----- ----- -----.

□ 현재 「예비군 교육훈련 훈령」(국방부훈령 제3065호)에 따르면
악천후, 재난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
각 군 참모총장 등의 판단 하에 예비군 훈련을 종료¹⁾하도록 하고
있고, 악천후로 인해 야외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는 훈련 대장 판단
하에 실내 교육으로 전환²⁾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「예비군 교육훈련 규정」(육군규정 522)에 따르면 혹서
및 혹한으로 야외훈련이 불가할 경우는 훈련대장 판단하에 실내
교육으로 대체³⁾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 시
악천후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조치를 법률에 반영하여
제도화하려는 것으로,

예비군 훈련 시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있는 경우 실내훈련,
훈련시간 조정,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
호우, 한파, 폭염 등 각종 기상 재해로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
하는 예비군 대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.

-
- 1) 「예비군 교육훈련 훈령」 제22조 (훈련일정조정 등의 승인권한) ① 재난지역선포, 악천후, 감염
병 등 특별한 상황 발생으로 예비군훈련 일정을 조정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훈련시간을 사용하
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2. 악천후, 재난 등으로 인해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동원훈련 I 형은 각 군 참모총장, 동
원훈련 II 형, 지역예비군훈련은 수입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을 종료하고, (이하 생략)
- 2) 「예비군 교육훈련 훈령」 제31조 (기타) ② 악천후 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악천후(우천 시 등)로 인해 야외훈련이 불가능한 경우는 훈련 대장 판단 하 실내교육으로 전
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3) 「예비군 교육훈련 규정」 제58조 (악천후 시 교육훈련) ① 혹서기 교육훈련 적용은 다음 각 호
의 절차를 따른다.
2. 혹서 및 혹한으로 인해 야외훈련이 불가할 경우는 여단장·대대장(훈련대장) 판단하에 실내
교육으로 대체하고, 혹서로 인한 훈련중지 및 연기, 훈련시간 조정은 장성급 부대장 승인 후 실
시한다.

- 한편,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17조의3⁴⁾에 따르면 현역병 등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지휘관은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한 휴식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- 국방부는 개정안으로 예비군 대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예비군훈련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307

4)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